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옥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취소 등 사유를 개선하여 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·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, 처분 일반 기준 추가 등 기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해당 사유 확대(안 제29조제1항, 별표2)

1)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

2)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,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며, 처분 일반기준을 추가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“1년 이상”을 “6개월 이상 계속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 개별기준의 나목과 다목2), 다목3), 다목4)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관련 법조문	행정처분의 기준	
		1차위반	2차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
나.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2호	시정명령	지정취소
다. 사업실적 부진 등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3호		
1)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 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2)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3)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4)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이전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었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과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취소 등) ① 법 제48조제1항제3 호에서 “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	제29조(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정당한 사유 없이 <u>1년 이상</u>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 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	1. ----- <u>6개월 이상</u> <u>계속하여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<u>1의2.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</u> <u>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</u> <u>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[별표 2]	[별표 2]
<u>< 신 설 ></u>	<u>1. 일반기준</u> <u>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</u> <u>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</u> <u>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</u> <u>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</u> <u>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</u> <u>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</u> <u>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</u>

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 개별기준의 나목과 다목2), 다목3), 다목4)에 따른 지정취소를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관련 법조문	행정처분의 기준	
		1차위반	2차위반
1.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2호	시정명령	지정취소
2. 사업실적 부진 등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3호	시정명령	지정취소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<u>1년 이상</u>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나.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다.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
위반행위	관련 법조문	행정처분의 기준	
		1차위반	2차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1호	지정취소	
나.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2호	시정명령	지정취소
다. 사업실적 부진 등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48조 제1항제3호	시정명령	지정취소
1) 정당한 사유 없이 <u>6개월 이상</u>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2) <u>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		시정명령	지정취소
3)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4)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		시정명령	지정취소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19